#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진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622

발의연월일: 2021. 4. 21.

발 의 자:정진석·홍문표·김태흠

박덕흠 • 이명수 • 이종성

김정재 · 김석기 · 지성호

유상범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

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,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 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.

이에 따라 통일, 외교, 국방 등을 담당하는 부처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 앙행정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완료한 상황이나, 국회가 여전 히 서울에 소재함에 따라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간 물리적 거리의 제약으 로 인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, 정책 품질 저하 등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 고 있으며,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음.

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및 국가의 재정을 소관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, 소속기관 중 국회예산정책처를 국회세종의사당에 둠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가

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하고자 함.

### 주요내용

- 가. 서울특별시에 국회서울의사당을,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함(안 제1조의2 신설).
- 나. 상임위원회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두는 것으로 하되, 국회운영위원회 와 정보위원회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지 않은 부(部)를 소관하 는 상임위원회는 국회서울의사당에 둘 수 있도록 함(안 제35조의2 신 설).
- 다. 국가의 예산결산·기금 및 재정 운용 등을 소관하는 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그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예산정 책처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도록 함(안 제45조제1항, 제22조의2제1항).
- 라. 국회사무처, 국회도서관,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서울의사당에 두는 소속기관은 국회세종의사당에 별도의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며,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서울의사당에 별도의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함(안제22조의4 신설).

##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2(소재지) 국회는 서울특별시에 국회서울의사당을, 세종특별자 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둔다.

제22조의2제1항 중 "국회예산정책처"를 "국회세종의사당에 국회예산정책처"로 한다.

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4(소속기관의 소재지) 국회사무처, 국회도서관, 국회입법조사 처 등 소속기관은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세종의사당에 별도의 기관을 둘 수 있으며,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서울의사당에 별도의 기관을 둘 수 있다. 그 명칭, 조직, 직무,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법률로 정한다.

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5조의2(상임위원회의 소재지) 상임위원회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둔다. 다만, 국회운영위원회 및 정보위원회와 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전대상에서 제외되는 부(部)를 소관하는 상임

위원회는 국회서울의사당에 둘 수 있다.

제45조제1항 중 "예산결산특별위원회"를 "국회세종의사당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"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2조의2제1항, 제22조의4, 제35조의2 및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국회세종의사당의 준공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한 준비행위) 이 법 시행 전에 국회는 국회세종의사당에서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 회를 위한 준비행위 및 시범운영을 할 수 있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1조의2(소재지) 국회는 서울특
	별시에 국회서울의사당을, 세종
	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
	<u>을 둔다.</u>
제22조의2(국회예산정책처) ① 국	제22조의2(국회예산정책처) ①
가의 예산결산・기금 및 재정	
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분석	
•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	
기 위하여 <u>국회예산정책처</u> 를 둔	국회세종의사당에 국
다.	회예산정책처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제22조의4(소속기관의 소재지) 국
	회사무처, 국회도서관, 국회입
	법조사처 등 소속기관은 의정활
	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세종
	의사당에 별도의 기관을 둘 수
	있으며,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
	서울의사당에 별도의 기관을 둘
	수 있다. 그 명칭, 조직, 직무,
	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
	<u>정한다.</u>
<u>&lt;신 설&gt;</u>	제35조의2(상임위원회의 소재지)
	<u>상임위원회는 국회세종의사당</u>
	에 둔다. 다만, 국회운영위원회

제45조(예산결산특별위원회) ① 저예산안,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(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심사하기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② ~ ⑥ (생 략)

<u>및</u>	정.	보유	기원	회.	와	Г	<u> </u> 행	정	수	도
<u>후</u> :	속다	] 책	을	위	한	연 /	/] ·	공	주	지
역	행 7	정중	수심	복	합도	시	건/	설钅	<u>)</u> 크	위
한	특	별팀	]	저	16	조지	123	j-0		따
라	0]	전대	개 신	나에	서	제.	외도	]는	<u>-</u>	부
<u>(部</u>	()를	크	`관	하극	느	상역	김위	원	회	는
<u>국</u> :	회사	울	의	나딩	-에	둘	수	) ル	] [	<u>}.</u>
45	조(여	계신	ŀ결	산부	특별	<u> </u> 위	원호	)	1	_
		국	회서	]] 종	의/	사딩	-에		예	<u>산</u>
결/	산특	増	위육	원 호						
2	$\sim$	6	( ক্	<u>년</u> 행	과	같.	음)			